##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350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한정애·부승찬·정성호

이기헌 · 이학영 · 윤후덕

조인철 · 송옥주 · 고민정

박홍근 • 한창민 • 박홍배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발생도 급증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마련할 비용과 공간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이에 기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거나 신규로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

13항 신설).

법률 제 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⑫ (생	전용주차구역 등) ①~ ⑫ (현
략)	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
	<u>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u>
	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
	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
	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